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9th August 2013

- ▶ WHERE IS GRACE CHANG?:
CONNECT THE DOTS!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최근 무역 이슈
..... 3
- ▶ FTA NEWS: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5
- ▶ VOICES FROM THE FIELDS:
간과하면 안 되는 외국환거래제도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9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④9
..... 11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Connect the Dots!



장승희
 대표 관세사

4년 만에 우승의 문턱에 와있다는 여성 프로골퍼의 게임을 보았습니다. 뛰어난 실력이 있었기에 청운의 꿈을 안고 바다를 건너 가 매일 죽을 것 같이 연습을 하였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출전하는 시합마다 패배를 맛보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시간들이 연결이 되고 합쳐져서 우승의 고지에 올라서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래 전에, 그때는 어렸던 아이들과 Connect the Dots 라는 그림책을 갖고 놀았습니다. 백지에 점들만이 가득한 페이지를 열며 이 점들을 이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미리 맞춰 보기도 했습니다. 유아용은 점이 몇 개 없는 단순한 그림이었으나 좀 더 성숙한 아이들을 위한 100개가 넘는 점들을 이어야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나온 점들을 이어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 것 인지..? 오늘 하루는 내 전체 인생의 어느 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최근 무역 이슈' 입니다. 최근 법령개정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간과하면 안 되는 외국환거래제도' 및 관세평가에 대한 미국 관세청 예규를 정리한 기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입니다. 푸른 숲, 파란 바다를 보는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맑고 시원한 공기를 가득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낼 날들이 여러분 인생에 더욱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점들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멋진 8월 보내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최근 무역 이슈



성기창 관세사
kcsung@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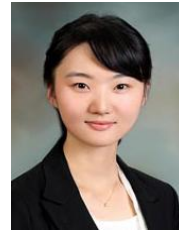
김혜정 관세사
kimhj@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간과하면 안 되는 외국환
 거래제도



이동훈 관세사
dhlee@customsservice.co.kr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임보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RULINGS ^㉞
 수수료의 과세여부 및
 공제요소의 처리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인천공항 지사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전담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컨설팅 전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자
 - FTA 컨설팅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28기 관세사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최근 무역 이슈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필두로 국가 재정 수요를 확보하고자 조세의 양대 기관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조사 인원을 증대하는 등 강도 높은 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더불어 수출입 기업들은 최근 관세·무역과 관련 된 법령개정 사항 및 기업조사에 있어 자주 지적되는 이슈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협정 및 관세 인하로 수입통관 이후의 관세 추징에 대해 업체들의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 조사로 인해 추징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 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본 개정의 적용시점이 수입 신고 시점이 아닌 추징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 → 5년 연장”

기존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간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기간은 2년이었으나 이를 5년으로 연장하여 부가세를 비롯한 기타 내국세의 제척기간과 그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다만 업체의 경정청구기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바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역시 늘어났다. 본 개정의 적용 시점은 수입신고일 기준이기에 향후 새롭게 신고되는 수출입 신고 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통관 수수료 세금계산서 공급자 (관세사) 직접 발행

통관 대행이 불가한 포워더가 화주의 편의를 위해 국제운송료 등에 통관 수수료를 포함시켜 1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오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세청의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 왔다. 따라서 포워더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관세사 및 포워더는 발행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제재 및 기타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4. 외국환 거래 이슈

수출입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외국환 거래를 수반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외국환 거래의 경우 일종의 절차법으로 각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수반되며, 고의성이 없이 단순한 절차위반이라고 할지라도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형이 부과되는 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채권회수명령, 상계처리, 기간초과 지급, 제 3자 지급의 경우 그 준수 사항을 잘 체크해야 한다. 이제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스스로 체크해봄으로써 제대로 된 외국환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5. 특송물품 목록통관 수입신고 유의사항

목록통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와 달리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는 물품이기에 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 견품으로서 미화 100 불 이하의 수입물품만이 해당되며 의약품, 한약재를 비롯하여 11 가지 제외 품목이 정해져 있다. 특송업체를 통해 수출자가 임의로 지정한 가격으로 목록통관 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관부가세 추징은 물론 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까지 처벌 될 수 있기에 일정 주기별로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수출입 기업들의 경우 국내거래만 주로 하는 업체들과는 달리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등 추가 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러한 사항을 미처 놓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관세 조사 등을 통한 관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최소한 상기의 5 가지 이슈 사항 들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를 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올바른 경영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성 기 창

kcsung@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한-중 FTA 추진, 급물살을 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가 최초로 발효된 후, 2011년에는 유럽 2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최근에는 거대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FTA가 체결, 발효되면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의 경우, 2004년 양국간 민간에서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긴 하였으나, 2012년 정부간 협상개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한-중 FTA는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요원한 일이었다.

그러던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난 직후부터이다. 한-중 양국간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지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 6차 한중 FTA 협상에서는 양국정상간 합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한-중 FTA의 협상지침을 확정하는 등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목표로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해 보인다.

전기전자, 석유화학산업, 최대의 수혜자 될 듯.

한-중 FTA의 체결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체결 후 기대이익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중 FTA의 가장 큰 수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대중국 수출품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정보기술 (IT), 철강, 기계 등 해당 품목에 부과되었던 다소 높은 수준의 관세가 철폐 및 인하되면, 가격경쟁력 혜택이 비교적 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농수산업계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의 대응전략

수해업종과는 달리, 한-중 FTA 추진의 가속화로 농수산업계는 울상이다.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기후가 비슷하여 국내농수산업계와 경쟁구도에 있는 동종품목이 많아,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게 되면, 한-미 FTA 나 한-EU FTA 체결로 인한 충격과는 비교 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중 FTA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농수산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조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 초민감품목은 통상산업포럼에서 선발한 품목을 우선 배려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중 FTA 에서 농산물 양허수준을 한-미 FTA 보다 낮게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개방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FTA 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할 수 없는 한-중 FTA, 이용하고 선점하자.

양국 협상단은 8 월말이나 9 월 초쯤 중국에서 7 차 협상을 열고 개방품목 비율을 정하는 1 단계 협상을 끝낸 뒤 구체적인 개방품목을 정하는 2 단계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마도 정부는 언론이나 농수 산업계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것처럼, 한-중 FTA 를 통해 대중국 교역을 확대시키고,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중 FTA 의 개방수준과 초민감품목의 선정 등을 현재로서는 점칠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중 양국 정상의 '높은수준의 포괄적 지역협정 체결' 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한-중 FTA 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한-중 FTA 는 안타깝게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FTA 로 인한 이익을 선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 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면 좋을 것이다. 한-중 FTA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기업은 수출입담당자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FTA 관련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FTA 무료교육이 개설되니, 교육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중소기업 FTA 교육사업' 에 신청하여 개별적으로 FTA 전문관세사의 방문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신청·접수 및 문의 :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한관세법인 (02-3448-1181)을 통한 직접 신청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정

(kimhj@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간과하면 안 되는 외국환 거래제도

1. 개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하경제양성화’는 관세행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청에서는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중에 발표된 ‘뉴스타파’의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관심을 어느 때보다 크게 만들었다.

관세청은 외환거래실적이 있는 중견 수출입기업 100 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범칙조사 51 개팀 247 명의 조사인원을 동원하여 6 월 1 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수출입업무가 많은 일선업체들의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기업심사/외환조사 컨설팅 등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수출입업체가 반드시 체크해야할 주요 외환거래 관련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주요 외환거래 관련규정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에 관련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업체가 주의하여야 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위반사항	관련 규정
채권의 회수명령	건당 50 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상계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간초과 지급	계약건당 2 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 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 3 자지급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출입업체, 특히 본-지사간의 무역거래시 대금지급을 장기간 보류하거나 상계 등을 통해 결제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반드시 ‘채권의회수명령’ 및 ‘상계’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즉, 50 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 년 6 개월 내에 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상계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신고를 한 후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당사자 간의 옵션에 의해 물품 수령 전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간초과 지급’ 및 ‘제 3 자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가액의 3 배가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3. 소결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수출입업체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엄격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외국환거래법상 규정하는 외환거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외환규정 위반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전담자를 지정하거나 관세법인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외환거래 관리업무의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환거래 관련사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장한다. 최근 일선 현장에서는 위반의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규정의 세심한 파악이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헌

dhlee@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개정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수출신고 항목 통폐합 및 필수기재 항목 정비
- 수출분야 제 4 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관련 신고항목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제출번호 신고항목 삭제

- 그간 별도 신고항목으로 관리하던 제출번호와 신고번호를 통합하여 수출신고번호로 일원화
- 기존 제출번호를 수출신고번호로 활용(신고인 부호(5)-연도(2)-일련번호(7))
- * 수출신고번호체계에 있던 세관부호, 과부호는 별도 항목으로 신고

필수입력항목 정비

- 신고정보 활용도가 미흡한 "검사희망일" 항목을 필수입력항목에서 선택입력사항으로 변경

3. 시행시기

2013. 7. 10(수)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 개정이유

- 적재지검사 절차 개선사항 반영 및 수출고시 개정사항('13.2.5) 반영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 적발시 적발점수 상향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적재지검사 절차 개선(안 제 13 조, 제 14 조)

- 적재지 세관장이 검사생략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재지 검사 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 특별한 우범요인이 없는 검사대상으로서 수출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 개정사항 반영
- 적재 전 검사 → 적재지 검사

수출검사 결과부호 추가 운영(안 제 11 조 및 별표 3)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적발의 경우 적발점수 3점 부여
-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시 적발수량에 따라 적발점수 차등 관리
- 5 개 미만 : 1 점
- 5~9 개 : 2 점
- 10 개 이상 : 3 점

3. 시행일자

2013. 7. 15(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1.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123 2013- 60 호('13.06.28) Steering Damper; 8989×M 등 2 건 141
- 124 2013- 60 호('13.06.28) 박막결정화 Laser Device;SX 315 & LB465 142
- 125 2013- 60 호('13.06.28) Iron Man(Mark IV) 등 3 건 143
- 126 2013- 60 호('13.06.28) Chalie Chaplin Hat 144

2. 품목분류 변경내용

품명	변경전 품목분류	변경후 품목분류
Steering Damper ; 8989×M ; Germany	제 8302.30-0000 호	제 8708.94-0000 호
박막결정화 Laser Device ; Excimer Laser Annealing System Lambada SX 315 & LB465	제 8486.30-3010 호	제 8486.30-9090 호
Iron Man	제 9503.00-3200 호	제 9503.00-3493 호
Charlie Chaplin Hat	제 6505.00-9090 호	제 9705.00-0000 호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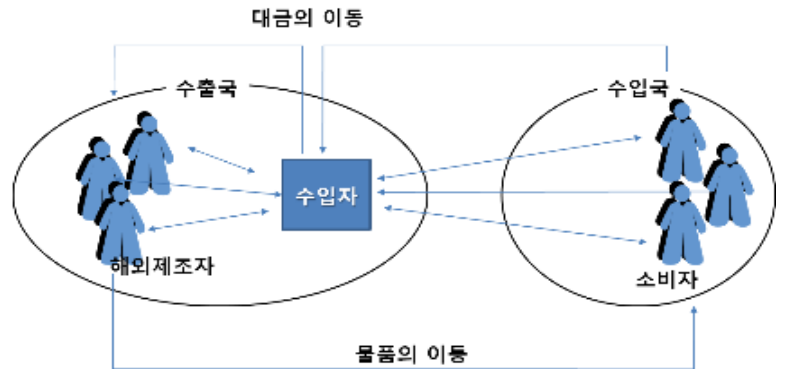
수수료의 과세여부 및 공제요소의 처리 (HQ546037 1996.01.31)

□ 거래사실(Facts)

1. 거래내용

수입자 I 는 제조국에 소재하여 여러 해외제조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당사자임

2. 상업송장의 내용



청구자 (invoice from)	제조사
피청구자 (invoice to)	수입자(I)
물품가격	\$200,000
대리점 수수료 (agent' commission) - (물품가격의 2%)	- \$4,000
운송비용/취급비용 (international freight/handling charge)	+ \$20,000
보험료	+ \$700
지급조건 : 송장발행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 2% 추가할인 적용 또는 송장발행일로부터 60 일에 상기 금액을 전액 지급	
거래조건 : FREE DELIVERED DUTY PAID	

3. 세관의 주장

세관은 I 를 해외제조자의 대리인으로 판단하고, 상기의 비용 중 대리점 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였음

4. 수입자의 주장

가. 대리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일 뿐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님
 나. I 는 해외제조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 물품을 미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함 (이를 입증하기 위해 I 와 해외제조자 간의 구매자문서 및 송장, 그리고 I 와 미국내 소비자의 구매자문서 및

송장을 각 각 제출함)

다. I 는 해외제조자 및 미국내 소비자와 특수관계가 없음

라. I 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자"로 기록되어 있음

마. 거래에 따라 해외제조자는 I 가 어떤 미국 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I 가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알 수는 없음 (미국 내 판매가격은 오로지 I 가 소비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함)

바. "수수료(Commission)"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이고 그 내용은 할인에 불과한 것이며 물품가격에서 공제된 "수수료"에 상응하는 어떠한 반대급부를 해외 제조자에게 또는 해외제조자를 대신하여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없음

□ **쟁점(Issue)**

1. I 가 판매대리인이 아니며,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수수료를 포함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2. 실제지급가격에서 국제운송료, 보험료, 관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급조건에 따라 송장발행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받게 되는 2%할인금액을 실제 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판매수수료

가. 법적근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에 판매수수료와 같은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함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1) 판매자와 구매자로 보여지는 당사자간에 진정한 판매가 일어났는지 여부는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해당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Dorf International vs. U.S. 1968)
- (2) "판매"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봄 (J.L Wood vs. U.S. 1974)
- (3) 진정한 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상황에 의해 각 당사자가 진정한 판매자 및 진정한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 확인되어야 함 (다수의 대법원판례)
- (4) 수수료 명목으로 표시된 비용이 판매수수료가 아닌 다른 성격의 비용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판단할 수 있음 (HRL 544907, 1992)

다. 수입자의 주장

I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I 와 해외제조자 및 I 와 미국 내 소비자 간에 진정한 판매(bona-fide sale)이 존재하고, 송장에 기재된 "대리점 수수료 (agent's commission)"은 판매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

- (1) I 가 해외제조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과 위험을 갖게 된다는 점,
- (2) I 가 미국내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해외 제조자로부터의 구매가격을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 (3) 해외제조자는 미국내에서 I 가 판매하는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
- (4) 미국내 소비자는 I 에게 물품가격을 지급하고, 해외제조자와는 어떠한 대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
- (5) I 는 해외제조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물품에 대한 가격만 해외 제조자에게 지급한다는 점
- (6) I 와 해외제조자, I 와 미국 내 소비자 간에 물품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라. 판단

- (1)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물품은 해외제조자로부터 미국내 소비자에게 곧바로 선적됨
- (2) 송장에 기재된 거래조건이 "FREE DELIVERED DUTY PAID(DDP)"인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I 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외제조자가 미국내 소비자에게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을 부담함
- (3)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사안에서의 "수수료"가 판매수수료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4) 따라서, I 는 수입자가 아닌 판매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는 판매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해외제조자가 이를 물품 판매가격에서 공제한 것으로 판단됨

2. 국제운송료, 보험료, 관세

가. 법적근거

(1)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총 금액을 말하며, 수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물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함 (관세법 402(b)(4)(A))

(2) 다음과 같은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명백히 구분가능한 것이라면,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402(b)(3))

(A)

(B) 물품이 수입됨에 따라 그 당시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와 기타 연방세 및 연방소비세

나. 관련 예규

(1) 관세법 402(b)(4)(A)에 따라 국제운송료,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러한 비용을 추측을 통해 산정하여 놓은 자료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송서류를 기초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용 등을 확인하여야 함 (HRL544538, 1992)

(2) 판매자가 보험에 부보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자로부터 보상받게 되는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닌 판매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 (HRL543827, 1987)

다. 판단

(1) 본 사안의 경우 DDP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DDP 조건은 판매자가 수입국에서의 관세, 제세 및 인도에 관련된 기타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INCO TERMS 1990, 국제상업회의소)

(2) DDP 조건에서 판매자는 운임, 보험료 및 수입관세를 부담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3) 하지만, 판매자가 수입물품에 포함시키는 운임, 보험료는 추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운송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판매자가 지급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를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음

(4) 수입관세는 그 성질상 실제지급가격으로부터 구분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세로 계산된 금액만큼을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음

3. 45 일 이내 지급에 따른 2%할인

가. 법적근거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가격의 도출방법 (할인이 적용되거나, 협상에 의한 것이거나, 어떤 산출 공식에 의한 것이거나)에 대한 고려는 필요없다. (관세법 시행령 103(a))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할인된 가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할인의 효력이 수입 전에 이미 발생하여 실제지급가격에 반영되어야 함 (Allied International vs. U.S, 1992)(HRL 545659, 1995)(HRL 544907, 1992)(HRL 543302, 1984)(HRL 543537, 1986)(HRL543662, 1986)

다. I 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할인을 받은 사유가 송장발행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할인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결정(Holding)

쟁점 1. I 는 자신이 판매대리인이 아님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I 가 해외 제조자로부터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받은 "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쟁점 2.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운송비용, 보험료 및 수입관세를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

쟁점 3. 2%에 상당하는 할인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